

# 보도자료

(농림부)

○ 제공일 : 2003. 3. 15.  
○ 제공자 : 농림부 채소특작과  
○ 과 장 : 여 인 흥  
○ 사무관 : 이 정 삼  
○ 전 화 : 500-1864

이 자료는 2006년 3월 16일 <sup>간</sup>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제목 : 제1차 한·일 딸기 로열티 협상실시

- 日, 딸기생산자협의회가 전용실시권을 구매하길 위해

- 3.14일 '한국딸기생산자협회'는 일본에서 육성된 국내 주요 딸기 재배품종인 육보(레드펠)와 장희(아끼히메)의 품종보호권자와 한·일 양국의 정부관계자가 참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제1차 로열티 협상을 하였다.
- 일본측은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딸기생산자협회가 육보, 장희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구매할 것을 제안하였고, 딸기생산자협회는 일본측 제안에 대해 생산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매 여부를 검토기로 하였다.
- 제2차 협상은 5.16~17일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, 구매금액, 일본 미수출 조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.
- \* 전용실시권이란 품종보호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
-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육성권자에게 본인이 육성한 품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로
- 딸기는 2000년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 확대계획에 따라 당초 2004년 지정 계획이었으나, 국제경쟁력,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2006년으로 연기한바 있다.

## 딸기 품종보호지정 현황 및 추진 경과

### □ 딸기 품종보호 지정 현황

- 딸기는 품종보호지정 계획안('00. 3)에 따라 '04년 지정 계획이었으나,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'06년으로 연기
- 우리나라는 '02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(UPOV)에 가입하고 '09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임
- \* 일본 육성품종인 육보(레드필), 장희(아키히메)가 국내재배품종의 87%정도 차지
- \* '06년 지정될 경우 '07년에 식재되는 딸기묘부터 로열티 지급

### □ 추진 경과

- '05년 상반기, 딸기 농가 등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딸기의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 계획('06년 지정) 홍보
- \* '05년 하반기 '딸기사업단'을 발족하고 '06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씩 투자, '10년에 국내품종 50% 보급을 목표로 신품종개발 및 보급 추진(농진청)
- '05년 하반기, 딸기 농가, 생산자 단체 및 농협을 대상으로 생산자 단체 결성 후 육보·장희 일본 품종보호권자와 로열티협상 필요 홍보
- '05.12. 한국딸기생산자협의회 결성
- '06.1, 정부, 농협, 딸기생산자협의회 대표와 협의를 통해,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로열티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
- '06.2, 3월중순경에 양국 생산자 단체간 협상이 추진되도록 양국 정부간 주선협의

<참고 2>

## 딸기 주요 재배현황 및 수출입실적

### □ 재배면적 및 생산량

- 딸기 재배면적은 '02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음
  - ('00) 7,090ha → ('02) 7,816 → ('04) 7,329 → ('05) 6,306
  - ('00) 181천톤 → ('02) 210 → ('04) 203 → ('05) 182
- \* '01년 이후 수출물량 감소로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음

### □ 품종별 재배면적

- 일본품종인 육보와 장희의 재배면적 점유비는 86.6%로 높음
  - 품종별 재배면적 점유비 : 육보 49.7%, 장희 36.9, 매향 3.8, 기타 9.6
- 딸기의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시 일본 품종의 국내 품종보호권 잔여기간
  - 육보 : 일본등록 '93.11.25로 국내에서 보호기간은 '13.11.24임
  - 장희 : 일본등록 '92.1.16로 국내에서 보호기간은 '12.1.15임

### □ 수출실적

- 딸기 수출은 '01년을 기점으로 '02년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일본 수출 감소로 크게 줄었음
  - ('00) 9,531천\$ → ('01) 11,084 → ('03) 4,497 → ('05) 4,406
  - 수출액중 '01년 이전에는 신선딸기가 60% 수준이었으나 '05년은 30% 수준으로 크게 감소
- \* 일본수출은 '01년까지 수출물량의 전부를 차지하였으나, '03년 이후는 3~4백만\$ 수준으로 약 90% 수준임

### □ 농가별 모주 확보 현황

- 현재 농가의 모주 확보는 87%정도가 자가육묘를 통하여 생산하고 있으며, 기타 모주 전문 생산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있음
- 육보 및 장희의 모주 가격은 약 300~400원이며, 자묘의 가격은 일반묘 130~150원, 포트묘 200원 정도에 거래
  - 1개의 모주에서 약 30개정도의 자묘를 생산할 수 있음

<참고 3>

딸기 품종보호지정계획에 대한 설명자료

□ 품종보호제도란 무엇인가?

▶ 신품종을 육성한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『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제도』로서 특허와 비슷한 제도입니다.

□ 품종보호제도의 필요성은?

▶ 농업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육성된 우수 품종을 적법하게 이용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

▶ 다만 일시적으로 종자비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나, 중장기 적으로 볼 때 국내 품종개발 활성화와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.

□ 품종보호권"이란 무엇인가?

▶ 신품종육성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적재산권의 하나로서 보호품종의 생산, 증식, 조제 등을 독점하며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침해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품종보호권 존속기간?

▶ 딸기와 같은 일반작물의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.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25년입니다.

\* 품종보호권은 존속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가지며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나 동 품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□ 외국딸기 품종의 보호권은?

▶ 외국(일본 등)에서 육성된 딸기 품종이 국내에서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등록되어야만 합니다.

□ 품종보호권이 발생하는 시점은?

▶ 품종보호권은 출원된 품종이 서류심사 및 재배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(품종보호권이 발생한 날)부터 생기게 됩니다.

▶ 다만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되면 품종보호권자는 출원공개일부터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전까지 이루어진 실시에 대해서 임시보호권이 부여되므로 소급하여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.

□ 품종보호권 침해시 벌칙은?

▶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\* 품종보호권 침해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·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.

□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계획은?

▶ 우리나라는 1998년 품종보호대상작물 27개 작물을 지정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 12월 현재 155개 작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.

▶ 딸기는 2006년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할 계획이며, 2009년까지 모든 식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.

<참고 4>

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 작물('97-'04)

년 도	대 상 작 물 명
'97.12.31 (27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량작물(6) : 벼, 보리, 콩, 옥수수, 감자, 밀</li> <li>○ 채 소 류(14) : 무, 배추, 양배추, 고추, 토마토, 오이, 참외, 수박, 호박, 파, 양파, 당근, 상추, 시금치</li> <li>○ 과 수 류(3) : 사과, 배, 복숭아</li> <li>○ 화 훼 류(1) : 비모란 선인장</li> <li>○ 사료작물(3) : 라이그라스, 톨페스큐, 레드클로버</li> </ul>
'00.5.1 (30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량작물(2) : 귀리, 고구마</li> <li>○ 채 소 류(3) : 멜론, 녹색꽃양배추, 꽃양배추</li> <li>○ 과 수 류(2) : 포도, 유자</li> <li>○ 화 훼 류(14) : 리시안서스, 페튜니아, 고데치아, 봉선화, 히야신스, 시클라멘, 개나리, 무궁화, 알스트로메리아, 금어초, 팬지, 데이지, 상사화류, 조개나물</li> <li>○ 특용작물(7) : 참깨, 들깨, 땅콩, 유채, 당귀, 황기, 느타리버섯</li> <li>○ 사료작물(1) : 오쳐드그래스</li> <li>○ 기 타(1) : 인삼</li> </ul>
'01.7.1 (31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 훼 류(21) : 덴드로비움, 나도풍란, 풍란, 새우란, 장미, 백합, 국화, 아이리스, 글라디올러스, 튜립, 포인세티아, 맨드라미, 스토크, 백일초, 물망초, 시레네, 한련화, 금잔화, 알릿섬, 아게라툼, 윈추리류</li> <li>○ 특용작물(10) : 지황, 구기자, 마(산약), 시호, 도라지(길경), 결명자, 토천궁, 맥문동, 구릿대(백지), 식방풍</li> </ul>
'02.6.17. (25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량작물(4) : 호밀, 팥, 녹두, 완두</li> <li>○ 채 소 류(3) : 가지, 박, 팥초이(청경채, 백격채, 백채)</li> <li>○ 과 수 류(1) : 키위프루트(참다래)</li> <li>○ 화 훼 류(9) : 극락조화, 카틀레아, 온시디움, 옥잠화, 종꽃, 펠라고늄, 모란(목단), 칼랑코예, 산취선인장</li> <li>○ 특용작물(8) : 영지버섯, 강활, 더덕, 하수오, 택사, 황금, 작약, 홍화(잇꽃)</li> </ul>
'04.12.1 (42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량작물(2) : 강낭콩, 울무</li> <li>○ 채 소 류(4) : 갓, 콜라비(순무양배추), 순무, 쪽갓</li> <li>○ 화 훼 류(31) : 다알리아, 알리움, 프리틸라리아, 글록시니아, 칼라, 무스카리, 오니소갈럼, 안스리움, 크로커스, 아마릴리스, 철쭉류, 동백, 수국, 카네이션, 거베라, 안개초, 군자란, 스타티스, 베고니아, 센토레아, 팔레늘시스, 매발톱꽃, 초롱꽃, 섬초롱꽃, 용담, 큰용담, 눈개쭉부쟁이, 보춘화(춘란), 한란, 패랭이꽃, 프리지아</li> <li>○ 특용작물(5) : 오미자, 일당귀(왜당귀), 삼주(백출), 일천궁(천궁), 진흙버섯</li> </ul>

<참고 5>

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 계획('06-'09)

년 도	대 상 작 물 명
2006 (31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량작물(1) : 메밀</li> <li>○ 채 소 류(7) : 딸기, 부추, 케일, 근대, 아욱, 치커리, 엔다이브</li> <li>○ 화 훼 류(17) : 독일영경귀, 벨피니움, 플록스, 고무나무, 행운목, 필로덴드롬, 킬란드시아, 심비디움, 아네모네, 클레마티스, 란타나, 리아트리스, 아데니움, 아디안텀, 오스문다, 드라세나, 페페로미아</li> <li>○ 특용작물(5) : 독활, 만삼, 향부자, 지모, 치자</li> <li>○ 사료작물(1) : 알팔파</li> </ul>
2008 (23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량작물(3) : 조, 기장, 수수</li> <li>○ 채 소 류(3) : 셀러리, 파슬리, 춘채</li> <li>○ 과 수 류(4) : 감, 자두, 살구, 매실</li> <li>○ 특용작물(6) : 양송이, 감초, 두충, 산수유, 천마, 팽이버섯</li> <li>○ 산림식물(6) : 표고버섯, 밤나무, 느티나무, 벗나무, 단풍나무, 대추</li> <li>○ 기 타(1) : 담배</li> </ul>
200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타 전작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량작물 : 동부, 참두 등</li> <li>- 채소작물 : 마늘, 토란, 생강 등</li> <li>- 과수작물 : 감귤, 양앵두 등</li> <li>- 화훼작물 : 관음죽, 벤자민, 야자류 등</li> <li>- 특용작물 : 만가닥, 잎새버섯 등</li> <li>- 사료작물 : 화이트클로버, 티모시 등</li> <li>- 산림식물 : 잔디 등</li> <li>- 수산식물 : 김, 미역, 다시마 등</li> </ul> </li> </ul>